



경찰용 드론 불법비행 단속 관련 제도 및 안내사항



형벌 사항

▶ 기체신고

- 처벌기준**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
- 관련규정** 항공안전법 제122조, 제161조
- 위반사항** 신고대상 드론을 신고하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
- 사업용(무게 기준 없음) 및 자체중량 12kg 초과 비사업용 기체는 신고 대상
 - ※ 2021년 1월 1일부터 **최대이륙중량 2kg**으로 변경
- 확인사항**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(지방항공청 발급)
- ※ 2020년 12월 10일부터 **교통안전공단**에서 발급

▶ 비행승인

- 처벌기준** 200만원 이하 벌금
- 관련규정** 항공안전법 제127조, 제161조
- 위반사항**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(UA)을 제외한 구역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
- ※ 최대이륙중량이 25kg이하인 드론은 해당 없음
- 확인사항** 비행승인허가 공문(지방항공청 또는 해당 군 관제기관 발급)

▶ 사용사업 미등록

- 처벌기준**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
- 관련규정** 항공사업법 제48조, 제78조
- 위반사항**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을 등록 하지 않고 사업을 경영한 경우
- 확인사항**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증(지방항공청 발급)

▶ 미신고 기체의 영리목적 사용

- 처벌기준**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
- 관련규정** 항공사업법 제71조, 제80조
- 위반사항** 신고대상 기체를 신고하지 않고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경우
- 확인사항** 초경량비행장치 신고증명서(지방항공청 발급)
- ※ 2020년 12월 10일부터 **교통안전공단**에서 발급
 -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증 (지방항공청 발급)



과태료 사항

▶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

- 처벌기준** 200만원 이하 과태료
- 관련규정** 항공안전법 제129조, 제166조 동법 시행규칙 제310조
- 위반사항**
- 인구 밀집지역에서 인명·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또는 위험한 물건 낙하 등
 - 관제권(공항주변 반경 9.3km), 비행금지구역(원전주변 등)에서 비행하는 경우
 - ※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에서 해당지역 확인가능
 - 야간비행(일몰 이후부터 일출 전까지)
 - 음주·마약 등 비정상 상태에서 비행하는 행위
- 확인사항** (야간비행) 특별비행승인허가 공문(지방항공청 발급)
- (비행승인) 비행승인허가 공문(지방항공청 또는 군 관제기관 발급)

▶ 안전성인증 검사

- 처벌기준** 500만원 이하 과태료
- 관련규정** 항공안전법 제124조, 제166조
- 위반사항** 최대 이륙중량 25kg을 초과하는 기체가 안전성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(영리, 비영리 무관)
- ※ 시험비행 등 국토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
- 확인사항** 안전성인증서 확인(항공안전기술원 발급)

▶ 조종자증명

- 처벌기준** 300만원 이하 과태료
- 관련규정** 항공안전법 제125조, 제166조
- 위반사항** 자체중량 12kg 초과 영리용 기체를 조종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비행하는 경우
- ※ 2021년 3월 1일부터 **최대이륙중량 250g**으로 변경
- 확인사항**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확인(교통안전공단 발급)

▶ 보험

- 처벌기준** 500만원 이하 과태료
- 관련규정** 항공사업법 제70조, 제84조
- 위반사항** 제3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체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
- 확인사항** 보험증권, 초경량비행장치 사용사업 등록증(지방항공청 발급)



경찰용 드론 불법비행 단속 관련 제도 및 안내사항



1 드론 안전관리제도 및 위반시 처벌기준

안전관리 제도 및 처벌기준

구분	안전관리제도				위반 시 처벌기준
	자체중량 12kg 초과		자체중량 12kg 이하		
	사업	비사업	사업	비사업	
장치신고	○	○	○	×	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※2021년 1월 1일부터 최대이륙중량 2kg으로 변경
조종자 증명	○	×	×	×	300만원 이하 과태료 ※2021년 3월 1일부터 최대이륙중량 250g으로 변경
조종자 준수사항	○	○	○	○	200만원 이하 과태료
보험가입	○	×	○	×	500만원 이하 과태료
	이륙중량 25kg 초과		이륙중량 25kg 이하		
	사업	비사업	사업	비사업	
안전성 인증검사	○	○	×	×	500만원 이하 과태료
비행승인*	○ ○ △ △				200만원 이하 과태료 또는 벌금 ※관제권, 비행금지구역, 고도 150m 이상 비행 시는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승인 필요

비승인 * 비행승인

- 관제권 · 비행금지구역 또는 고도 150m 이상 미승인 비행 ⇒ 200만원 이하 과태료
- (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) 미승인 비행 ⇒ 200만원 이하 벌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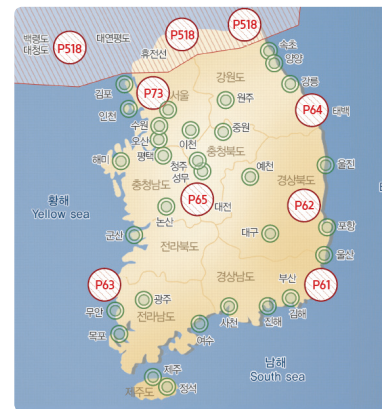
2 드론 비행공역 현황

- 1 모든 드론이 비행승인을 받아야 하는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
- 2 최대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경우, 비행승인이 필요한 일반구역
- 3 비행승인 없이 비행 가능한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(UA)으로 구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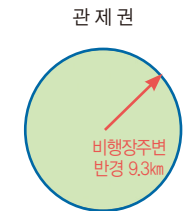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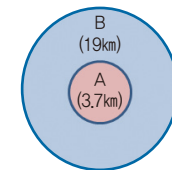
비행구역	비행승인 대상	지역		
		구분	필요지역	관할기관
1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	모든 드론	비행금지구역	휴전선 일대 서울 강북 원전 반경19km (5개소)	합참 수방사 합참(A구역: 반경 3.7km) 지방항공청(B구역: A구역 바깥) 관할 군부대(군 : 22개소)
		관제권	비행장 중심 반경 9.3km(31개소)	관할 지방항공청(민 : 9개소)
2 일반구역	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	비행금지구역 · 관제권 및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(UA)을 제외한 모든 지역		
3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공역(UA)	비행승인 불필요	전국 32개소(항공정보간행물 등재)		

※ 고도 150m 이상에서 비행 시는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승인 필요

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 현황



비행금지구역(원전주변, 5개소)



비행금지구역(P73, 서울강북)

